

예산총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99,180,750	29,975,423
일반회계	865,037,921	25,951,138
특별회계	134,142,829	4,024,285
기타특별회계	134,142,829	4,024,28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93,919	8,818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54,732,030	1,641,961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9,649,229	289,477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64,345,386	1,930,362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70,226	2,107
수질개선 특별회계	76,523	2,296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097,221	32,917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39,244	25,177
주차장 특별회계	3,039,051	91,17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647,000천원(일반 6,000,000, 재해·재난목적 5,647,000)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2,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